

2026. 4. 27.(월), 15:00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

'튼튼한 지원으로 기업을 이롭게' !

'26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설명회

2026. 4. 2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 주 고 용 센 터

순 서

1. '26년 임금체불 강화	3
2. 일터혁신, 4.5프로젝트	3
3. 청년고용장려금	3
4.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4
5. 고용유지지원금	6
6. 워라밸+4.5 프로젝트	7
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8
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
9. 정규직전환지원금	11
<참고> 기업지원종합서비스	12
고용24	13
일자리수요데이	14

【 설명회 개요 】

□ 개요

- (행사명) '튼튼한 지원으로 기업을 이롭게' 2026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설명회
- (일시) '26. 4. 27.(월) 15:00 ~ 16:00
- (장소)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고용센터: 센터소장, 기업지원과 과장 등 담당자 10명
 - 사업장: '26년 청년 채용 증가 예상 사업장 대표 및 담당자
- (내용) '26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안내, 임금체불 강화, 질의·응답 등

□ 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5:00~15:02('2)	▶ 인사말씀	▶ 센터소장	
PART 1	15:02~15:50('48)	▶ 임금체불 등	① '26년 임금체불 강화 10' ② 일터혁신·4.5프로젝트 10'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	▶ 과장 ▶ 감독관
		▶ 고용장려금 설명	④ 고용유지지원금 7' ⑤ 모성보호지원제도 10' ⑥ 기타 장려금 6'	▶ 담당자
		15:50~16:00('10)	▶ 질의·응답, 마무리	▶ 담당자
		PART 2 16:00~	▶ 1:1 현장 맞춤 컨설팅	▶ 사업장

※ 분야별 담당자

담당부서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노동기준조사과	▶ 임금체불	양성진 과장	062)975-6420
노사상생지원과	▶ 일터혁신, 4.5프로젝트	김종민	062)975-6326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김현욱	062)609-8650
	▶ 모성보호 사업(육아휴직 등)	김영진	062)609-8651
	▶ 고용유지지원금	박 연	062)609-8620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등)	이은순	062)609-8653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김미선	062)609-8622

청년고용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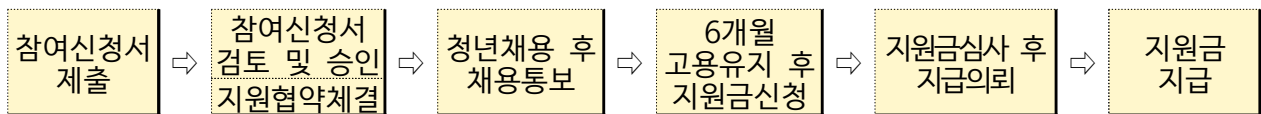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조정 방지 의무* 등)
 -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 불가
 - ※ 재학생은 제외(단,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는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비수도권
지원 대상	기업	①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 증견기업
	청년	만15~34세 미취업 청년
지원기간		사업주 1년
		청년 2년
지원 금액	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① 일 반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각 120만원) ② 우대지역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각 150만원) ③ 특별지역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각 180만원)

* 기준 (일반) 광주 5개 자치구, 나주, 제주도 (우대) 담양, 영광, 화순 (특별) 곡성, 구례, 장성, 함평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신청 절차)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위탁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 남구 진월동(동성고 후문 근처)	☎ 062-652-2070
(사)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북구 중흥동(광주역 근처)	☎ 062-608-9979
국제커리어센터	광주 북구 중흥동(북구청 근처)	☎ 062-415-7903
이노비즈(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 북구 월출동(이노비즈센터 내)	☎ 062-363-1333
내일엔광주	광주 서구 농성동(상공회의소 내)	☎ 062-716-2841
(주)베스트인 광주지사	광주 동구 대의동(동부경찰서 근처)	☎ 062-714-3658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제주시 용담일동(버스터미널 맞은편)	☎ 064-756-5425

'26년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 개요

- 지역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복지+센터 취업알선 및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

- 유형①: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화순, 곡성, 구례, 영광, 함평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 유형②: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유형①과 같은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자동차부품 및 뿌리업종, 보건복지업종 해당 기업

* 표준산업 분류코드가 보건복지업(86/87), 자동차부품(30) 및 뿌리업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유형	서비스 대상	지원내용
유형①	①실업기간 3개월 이상인 실업자 중 지역·산업특화센터 특화교육을 이수한 만 40세 이상 구직자 ②훈련수료 후 3개월 이상 미취업 구직자 ③'25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중 3개월 이상 미취업자 ④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광주 광산구)에서 '25년 이후 퇴사한 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 장려금 지원
유형②	①자동차부품 및 뿌리업종 ②보건복지업종(병·의원)	기업컨설팅 채용지원서비스 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유형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복지+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 유형②: ①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후 체질 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
 ②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복지+센터의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24에 구인·구직 신청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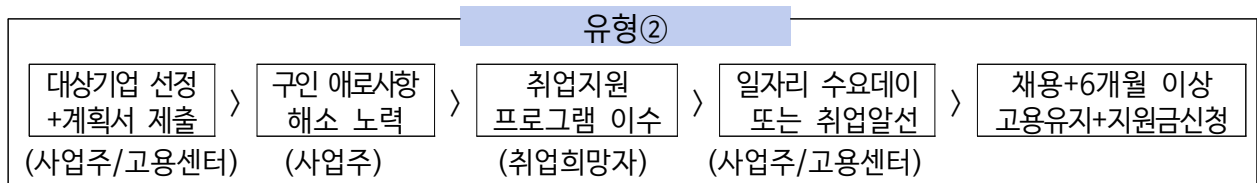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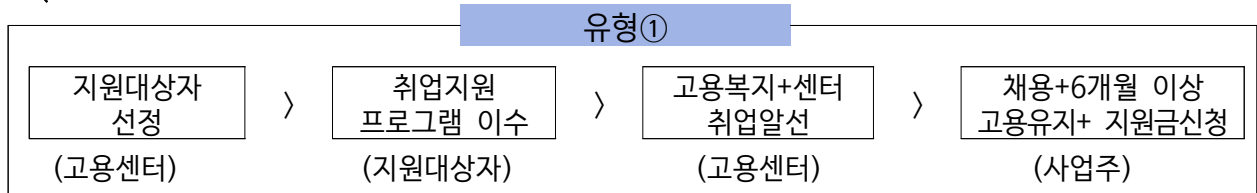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지원절차)



* 각 절차를 모두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6개월 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직전달)의 매출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②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 제출)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실시일 전일까지 접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 협의

③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 (휴업)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을 면제

※ 고용보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예정(26.5.12.)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조정(감원, 권고사직 등)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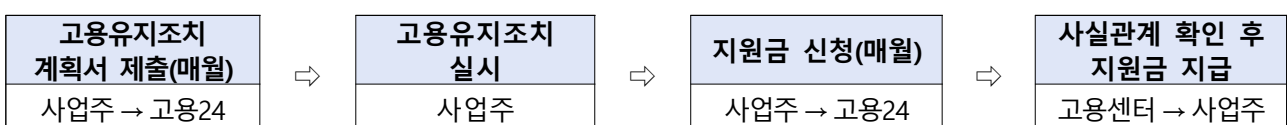
※ 참고(지원제외)

- ▶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고용조정이 예고된 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자
-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월 전체 부지급

○ 지원내용(유급 휴업·휴직)

구 분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대규모 1/2)	· 1일 68,100원	연 180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광산구)	· 우선지원 8/10(대규모 6/10)	· 1일 68,100원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대규모 2/3)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8,100만원	

○ 지원절차



워라밸+ 4.5 프로젝트

○ 개요

-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하는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20인 이상~300인 이하)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가능

○ (지원요건) ①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②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출 후 이행 결과 제출 ③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④주당 실근로 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 감소

*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3개월)한 경우 추가 지원

○ (지원내용)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300인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1인당 월 60만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20인 이상~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1인당 월 80만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6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50인 미만	없음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 등 제출(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go.kr) ⇨ 심사·승인(노사발전재단) ⇨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운영 ⇨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의】 광주지역 수행기관: 광주상공회의소 ☎ 062-350-589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개요

-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② 기존 임금 유지
-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등)
-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월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하루 1시간 단축(출퇴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기록 관리, 기존 임금 유지 등 필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첫 3개월	4개월~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특례	100만원	30만원	570만원
남성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 (특례)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25.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단가(200만원) 적용)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최초사용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 (최초사용 인센티브)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제도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용) ③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또는 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최대 지급액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월 최대 140만원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 인수인계기간(각 제도를 사용하기 전 2개월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에도 동일하게 적용

- ☒ (달리진 점) `26.1.1.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3개월 단위) 신청 시 전액 지급 (이전: 3개월 단위 신청시 50% + 제도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50% 지급)

□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육아휴직, 육아기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제도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5명 이하) ③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수당) 지급

○ (지원내용)

구분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20만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국·지자체·공공기관,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지원요건) ①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6개월 이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②정규직 전환 후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④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⑤지원 제외(사업주·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한도) 최초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은 3인)

○ (지원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장려금 40만원

- * 전환 후 임금증가율이 20만원 이상일 시, 임금증가보전분 20만원 추가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월평균 임금 증가분	지원 수준
20만원 미만	장려금 월 40만원
20만원 이상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40만원 → 월 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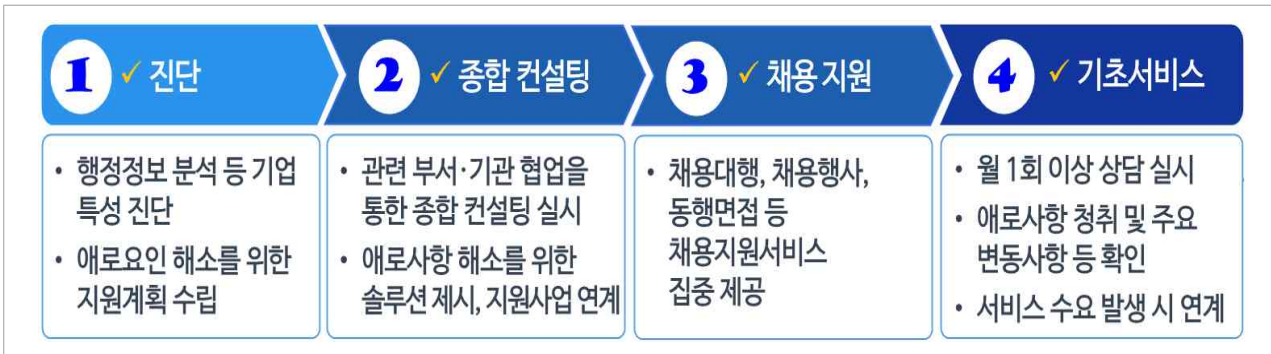
○ (지원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급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고용24홈페이지 www.work24.go.kr) → 요건충족시 승인통보 → 6개월 이내 계획 이행(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장려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광주고용센터에서는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기업의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지도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인 애로기업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 고용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1단계 사전 기업 분석

- ① 기업 인사담당자 컨설팅을 통한 고용 여력 등 분석·진단
- ② 협의 과정을 거쳐 기업 맞춤형 지원경로 설정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2단계 고용여건 개선·향상

- ① 지원금 지원 여부, 인사관리 체계 및 조직문화 등 개선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 ② 기업인지도 향상 및 고용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며 기업이 원하는 맞춤 인재 공급 지원

3단계 집중 채용지원서비스

-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 구직자 집중 매칭서비스 실시
- ② 신규 근로자 고용유지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모니터링)

[제외대상] 임금체불 이력이 다수 있는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나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불만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기업, 주로 계절적·일시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 등, 구직자의 수용 가능성, 행정력,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소장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사업은 특별서비스로 기업 선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팀


T 062-609-8622, 8736 F 062-712-4506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24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통합 고용서비스포털로 기업 대상으로는 인재 찾기+정부지원금+교육훈련+외국인고용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온라인 고용센터'입니다.

- **(PC버전)** 컴퓨터·노트북의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www.work24.go.kr)
-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에서 접속 가능하며, 작은 화면에 맞게 UI 디자인을 재구성(m.work24.go.kr)
- * 스마트폰용 앱은 알림(푸시)서비스·위치정보 등 추가 기능 제공


고용24 PC 메인 (기업서비스)화면	모바일(로그인 후)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정보 추천**



**기업이 원하는 직무와 조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 추천**



**개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 안내**



문의: 광주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 062) 609-8739, 8547, 8550

광주고용복지+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국민을 잇는 **일자리 수요데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 및 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소규모 채용행사**”

- 만남의 날(현장 면접):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 (빛고을 청년 수요데이): 기업홍보 및 채용설명회

□ 운영 개요

- (현장 면접) 구직자 발굴부터 현장면접까지 원스톱 지원
- 고용24 구인등록 → 협업 기관 공유 및 합동 구직자 발굴 → 현장면접 진행
- (빛고을 청년 수요데이) 대일센터,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관내 청년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에게 기업을 알리고 기업은 준비된 적합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운영

- (주요 협업기관) 지역 고용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별 협업 추진
대학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일경험 지원 위탁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위탁기관,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중장년내일센터(경총·노사발전재단),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북구청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센터 등
-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직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해당 직무에 필수 준비 사항 및 근속 유지를 위한 경력 설계 지원
- 수요데이 참여 기업에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컨설팅 제공을 통해 숨은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의: 광주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 062) 609-8590